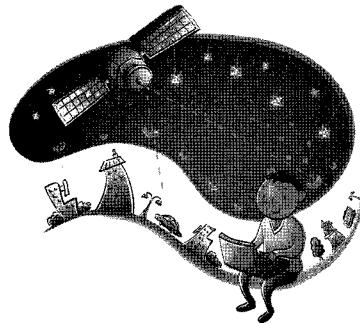


지재권침해 해외공급도 제재



국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물을 해외 공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침해물을 통관 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가 발표했다.

지재권(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을 총칭한다.

현행법에는 수입자, 판매자만 지정하여 제재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지재권 침해물을 세관이 통관보류할 수 있는 의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

국내기업의 S-보드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의 수입자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토록('06.10월) 하였으나,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꾸어 해당 침해물을 계속 국내에 유통시킨 바 있다. S-보드 특허권 보유기업은 '06년 이후 4년간 해당 침해물을 국내 유통업체 50곳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20억원 소요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은 지난해 이윤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내 지재권 보호기반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44,780개 국내외 기업 중 2,107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09.10.5~12.10까지 실시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재권 보호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현황의 경우, '08년 139개(6.6%) 기업에서 1,208건의 지재권 침해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07년 대비 기업수 27.5%, 발생건수 35%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의 경우, '08년 3,166억원(손해배상액·화해금액, 실현된 피해금액, 기대수익 손실금 포함)으로 '07년 1,939억원 대비 63.2% 증가하였으며, 국내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총 44,780개 기업으로 환산하면 국내 총피해규모는 총 1.4조원에 달하며, 이는 '08년도 국내 총생산(GDP) 1,024조원의 0.14%를 차지한다.

한편,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응답자의 33.5%), 정보제공 활동 강화(22.1%), 침해물을 국

【 지재권 침해 피해금액 】

(단위 : 개, 건, 백만원)

구 분	피해 기업수	피해 건수	피해금액(전체)			피해금액(2007년)			피해금액(2008년)			
			합계	피해 기업 평균	피해 건당 평균	합계	피해 기업 평균	피해 건당 평균	합계	피해 기업 평균	피해 건당 평균	
표본	합 계	162	2,103	510,653	3,152	243	193,972	1,780	217	316,680	2,070	262
	손해배상액(화해금)	92	431	66,260	720	154	12,943	264	70	53,317	784	215
	실현된 피해금액	127	912	236,276	1,860	259	119,344	1,473	278	116,932	1,073	233
	기대수익의 손실금	113	760	208,117	1,842	274	61,686	1,046	220	146,431	1,395	320
모집단	합 계	1,940	9,881	2,201,075	1,135	223	800,119	569	182	1,400,957	819	255
	손해배상액(화해금)	1,135	1,892	206,691	182	109	30,419	59	52	176,273	238	152
	실현된 피해금액	1,403	4,463	968,438	690	217	556,463	552	205	411,975	366	189
	기대수익의 손실금	1,464	3,526	1,025,946	701	291	213,237	304	196	812,709	655	377

내유입 차단(21.9%), 행정기관의 단속권한 강화(14.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금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해외공급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에서 반입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공급자에 의해 대량생산된 모조품이 수입자만 바꿔가며 계속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무역위원회가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통관보류 등 국경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침해물품의 국내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도록 한다.

셋째, 불공정무역 행위자가 무역위원회의 수입 ·

수출 · 판매 · 제조 중지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1일당 해당 물품가액의 5/1,000이내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무역 행위란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허위 · 과장표시 물품 수출입행위, 수출입계약 미이행 등으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무역위원회 이승재 무역조사실장은 “금번 법개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제

【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피해 대응활동 】

(단위 : %)

침해피해 대응활동		경고, 합의시도 등 자체 처리	행정기관에 단속 및 조사 요청	민 · 형사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 신청
침해 유형	국내 제조 · 판매 피해	85.2	8.6	8.3
	침해물품 수출입 피해	60.7	29.2	14.8
발생 원인	인지도 향상에 따른 모조품 유통	75.5	17.7	10.8
	인력유출 등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50.0	28.6	28.6
	협력업체의 계약 위반	60.0	14.3	30.6

한적 배제명령에 준하는 지재권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한적 배제명령이란 미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자, 해외공급자에 의한 해당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하는 것이다.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추진배경으로 향후 FTA가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국내외의 지재권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겪고 있는 침해피해 현황과 대응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07~'08년간 국내외기업의 지재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침해피해 현황, 대응 실태 등이다. 산업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브랜드)권, 디자인(의장)권이다. 저작권은 문학, 예술적 창작물, 공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등의 권리이다.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DB, 멀티미디어, 생명공학 등이다.

조사대상(모집단)은 최근 5년간('04~'08) 1건 이상의 산업체를 등록한 국내외 기업 44,780개이다. 표본구성은 지재권 등록 현황에 따라 10개 그룹화이다. 100건 이상 등록한 그룹은 전수조사, 기타 그룹은 계통추출하여 총 2,000개 기업의 표본집단 구성(다단계 충화 계통표집)이다.

조사방법은 설문지 우편발송 후 방문 회수, 피해기

업 중 정도가 심한 19개 기업은 직접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하였다.

조사결과는 총 4,059개 기업에 발송하여 2,107개 기업이 응답하였고, 설문응답률은 51.9%, 표본오차는 ±2.08%로 95% 신뢰수준이다.

모수추정은 10개 그룹별로 모집단의 수와 응답기업 수를 비교하여 가중치를 설정하고, 그룹별 집계된 응답 수를 모집단 규모로 확대하여 모집단 값 추정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지재권 보유 현황에서 응답기업(2,107)의 '04~'08년간 지재권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현황에서는, 응답기업 중, 162개 기업(7.7%)이 '07~'08년간 2,103건(업체당 13건)의 지재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모집단 저체로 환산하면, 1,940개 기업이 '07~'08년간 9,882건의 지재권 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재권 중 상표권의 침해피해건수(업체당 13.2건)가 가장 많고, 특허권(업체당 10.4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 중 특허권의 침해피해를 입은 기업이 가장 많고, 상표권, 디자인권 순으로 나타났다.

56개 기업이 2개 이상의 권리에 걸쳐 침해피해를 입었으며, 86개 기업이 '07~'08년간 계속하여 피해를 입었다. 연도별에서 응답기업 중 '07년도 피해기

【 지식재산권 침해대응의 장애요인 】

(단위 : %)

장애 요인	응답 기업 수	조사 인력·예산 부족	대리인 선임비용 부족	구제절차 소요시간, 비용 부담	구제조치 신청, 절차 복잡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력 부족
전 체	162	35.8	25.3	17.9	12.3	8.6
대 기 업	19	31.6	21.1	21.1	21.1	5.3
중소기업	143	36.4	25.9	17.5	11.2	9.1

업보다 '08년 피해기업이 큰 폭(27.5%)으로 증가(피해건수도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재권 중 특허권의 업체당 침해피해는 감소(7.8건 → 7.0건)하였으나, 상표권의 침해피해가 증가(7.3건 → 9.7건)하였다. 업종별로 '08년에 식품·의약품업종의 피해건수가 급증(352.4%)한 반면, 출판·영상업종은 감소(△90.3%)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피해건수로는 전기·전자업종(985건, 업체당 49.3건)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석유화학업종(197건, 업체당 17.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침해피해를 입은 기업의 비율은 섬유·패션(11.9%), 석유화학(11.2%), 금속제조업(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 대·중소기업 모두 '08년에 침해피해기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침해피해건수가 급증('07년 대비 40.6%)하였다. 응답기업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침해피해를 입은 비율은 비슷(중소: 7.6%, 대: 8.6%)하나, 침해피해건수는 대기업(1,126건, 업체당 59.3건)이 중소기업(업체당 6.8건)보다 많다.

권리별로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경우, 기계업종(각각 응답기업의 7.2%, 3.1%), 중소기업(3.6%, 1.4%)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되었다. 상표권의 경우, 석유화학업종(응답기업의 8.2%), 대기업(7.2%)이, 디자인권의 경우, 섬유패션업종(응답기업의 6.0%), 중소기업(2.1%)이 가장 많다.

침해물품의 유통형태별로 응답기업 중 '07~'08년간 국내에서 침해 물품이 제조·판매됨에 따른 피해건수가 압도적(72.8%)이다.

특히, '07년에 비해 '08년도에 침해물품 수출입에 따른 피해기업과 피해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지재권 침해물품 유통경로에 대한 인식에서는 침해물품 수입·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

는 기업은 제조사로 해외기업(76.3%)과 국내기업의 해외법인(23.7%)을 지목하였다.

특허권(84.6%), 상표권(65%), 디자인권(93%) 침해물품의 제조사로 해외기업을 지목하였다. 침해물품 제조·공급국가는 중국이 대부분(86.4%)을 차지하였다.

침해물품 수입·판매자는 국내기업(63.6%), 해외기업의 국내법인(22%), 개인(14.4%)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물품 수출·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제조사로 해외기업의 국내법인(70.4%)과 국내기업(29.1%)을 지목하였다.

특허권(53.3%), 디자인권(84.7%) 침해물품 제조사로 국내기업을 지목하였다. 침해물품 수출지역은 동아시아가 대부분(91.4%)을 차지하였다.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 및 대응비용에서는, '07~'08년간 침해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한 162개 기업의 피해금액은 최소 662억6천만원에서 최대 5,106억5천3백만원으로 조사(1건당 최대 243백만원, 1기업당 최대 3,152백만원)되었다.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은 연간 약30억원, 중소기업은 연간 약1~2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 현황을 보면,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에 대해 '경고, 합의시도 등 자체 처리'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침해물품의 수출입,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는 '행정기관에 단속 및 조사 요청'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의 장애요인과 정책요구로 피해기업들은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침해사실에 대한 조사 인력·예산의 부족' (35.8%)을 들었다.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으로 '실효성 있는 행정적, 사법적 처벌조치 강화' (33.5%)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